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90
------------	-----

2019년 4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31일, 오중석 의원 외 10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중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 기 간 : 2019. 2. 12 ~ 2019. 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수정동의
 -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등)이 개정 논의 중으로 상위 법령 개정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 향후 조례 개정 필요(안 제2조 관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이 행정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안 제5조 관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동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안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제3조 관련)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는 조례제정 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이용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2016년 6만대에서 2017년 7만 5천대로 20%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률을 토대로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확대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례하여 안전사고 또한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에 이르는 등²⁾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시책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 한국교통연구원, Brief KOTI, 2017 Vol.1 / No.3

2)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3.21.)

- 다만, 제2조(정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으로 상위법령 개정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등에 따라 추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이에 따른 사고가 늘어남에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시장이 관련기관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과 자원조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추진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관련)

- 안 제5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활성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여러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이 시행되고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 : 2018. 1. 24 / 법사위 회부

- 주요내용

1.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2.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있고 일부 사업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민원과 이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과 불법 도로점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

제5조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관련 단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모호하여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지원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지원금의 오용방지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회수 등의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실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안 제6조, 제7조 관련)

- 안 제6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현재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⁵⁾’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해 질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도로법 제61조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285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주요업무보고

- 안 제7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기수행⁶⁾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과의 연계를 통한 가이드라인 조성은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안 제8조, 제9조)

-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및 사업 추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효과를 높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면허 보유여부⁷⁾, 주행 가능도로⁸⁾ 및 안전장구 착용 등이 「도로교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실제 세부정책 수행시 해당 구청과의 협의가

6)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

- 용역기간 '18. 2. 9 ~ '18. 12. 31 - 용역금액 : 254백만원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방안 마련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작 등

7)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8)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생략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법령 개선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원활이 이용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